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3. 25 선고 2021가단55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상

변 론 종 결 2022. 2. 11.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9. 8. 14. 접수 제279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6억 원의 피담보채권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과정에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으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부존재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2004. 4.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9.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21. 7. 27.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원고들이 2021. 8. 24.경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받은 배당금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93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이미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피담보채권인 청구취지 기재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데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분쟁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이희경

부동산목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의 명칭 및 번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도로명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12층 아파트

1 층 297.7㎡, 2층 286.14㎡, 3층 286.14㎡,

4 층 286.14㎡, 5층 286.14㎡, 6층 286.14㎡,

7 층 286.14㎡, 8층 286.14㎡, 9층 286.14㎡,

10층 286.14㎡, 11층 286.14㎡, 12층 286.14㎡,

지층 273.33㎡

○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67,998.1㎡

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37,384.1㎡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18,148.8㎡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1.73㎡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종류 : 1.2.3 소유권 대지권

대지권 비율 : 123,521분의 72.805

-이상-

